

【형 법 25문】

【문 1】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방과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②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가 계속 회피하며 만나 주지 않자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 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왔고 그녀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그녀에게 연락하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반드시 절도범인과 점유자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재물을 사용한 후에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여 소유자가 우연히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한 데 불과한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 2】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란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 ③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내용은 요증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한정된다.

【문 3】 강도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는 피해자별로 강도상해죄 및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②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 ③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 ④ 강간범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경우 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문 4】 사기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③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경우, 그 후 명의인이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갔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문 5】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대표이사가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 뒤 그 납품업체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 ④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6】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 ④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7】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②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감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 ④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문 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문 9】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행위시점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후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항상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 ③ 형을 중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중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문 10】 도박개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박을 개장한다 함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도박이 현실로 행해질 것을 요한다.
- ③ 본죄는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 ④ 본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도박장소를 폐쇄하였을 때에 종료한다.

【문 11】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③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 ④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12】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
- ②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제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청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후환이 두려워 2주일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의 고의는 인정된다.
- ④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받은 금품 전부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문 13】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허용된다.
-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그 후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14】 다음 중 교사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언제나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③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문15】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다.
-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③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문16】 죄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배임행위를 한 경우 양 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어 사기죄의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③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문17】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 ①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본범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가 그 사기 피해자로부터 그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 ② A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B가 A로부터 그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③ 매수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토지를 처분한다는 정을 알면서 乙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④ 장물을 타에 매각하여 받은 돈임을 알면서 본범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은 경우

【문18】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 ② 공무원이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 ④ 본죄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문19】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 ③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도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
- ④ 기사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문20】 배임수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본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 ②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 ③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 ②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 ③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 사이에서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22】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주형의 선고는 유예하더라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있다.
- ②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③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 ④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문23】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을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 ③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정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업무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공동매수약정을 맺었음에도 그에 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경우, 위 소유권확인증서 작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2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 ②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갑과 을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25】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강도예비행위를 한 경우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에 흡수되고 별개의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단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 ③ 중고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존재함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